

경기도청 신청사 감사상담실 CCTV 설치 행정예고

「경기도청 신청사 감사상담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경기도 신청사 감사상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감사 업무에 사용

3. 시 행 청 : 경기도청

4. 사업내용 : 경기도청 신청사 감사상담실 내 CCTV 설치

5. 공고기간 : 2022. 5. 24. ~ 2022. 6. 13.(20일간)

6. 의견제출 : 2022. 5. 24. ~ 2022. 6. 13.(20일간)

7.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8. 설치장소 :

구분	설치장소	주소	대수
1	경기도청 신청사 12층 감사상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2층	1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별지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경기도청 감사총괄담당관(031-8008-2052)

라.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 우 편 : 1811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2층 감사총괄담당관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별지서식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행정예고 내용	경기도청 신청사 감사상담실 내 CCTV 설치	
의견제출 당사자	성명(개인/단체)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